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(개정조례안)

■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 제20조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를 삭제함.

■ 개정사유

- 행정절차법(법률 제5241호)이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(의견청취)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0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본조항을 삭제코자 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"행정절차법"이 '98. 1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, 청문통지서, 의견제출서 등 모든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(개정조례안 제20조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와 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청취)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하는 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, 분뇨, 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 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(삭 제)